

## 유산정리업무 위임 계약서

피상속인\_\_\_\_\_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 전원(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은 상속인 대표를 \_\_\_\_\_로 정하고 유산정리업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수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재산의 정리 및 분배에 관련된 업무(이하 "유산정리업무"라 한다)를 상속인이 은행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상속재산의 조회 및 자료수집
2. 상속재산목록의 작성
3.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협의서 작성 주선
4. 상속재산분할 집행
5. 상속세 등 신고·납부를 위한 절차

### 제2조 (유산정리업무의 범위)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유산정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리권을 은행에 수여한다.

1. 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목록 작성 및 상속인에 대한 교부
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에 관한 안내
3.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협의서 작성 주선
4. 상속인 앞으로의 재산 이전 및 명의 변경 등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따른 집행
5. 상속재산의 관리, 처분, 신탁설정 기타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따른 집행에 필요한 업무
6. 상속세 등 신고·납부를 위한 안내
7. 기타 상속절차 지원업무로 본 계약의 당사자 합의하에 특약에 기재한 업무
8. 위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

② 유산정리업무의 대상재산은 은행이 상속인의 협력을 얻어 작성한 전항 제1호의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으로 한다.

### 제3조 (외부 전문기관의 선임)

① 은행은 상속재산의 가치평가, 등기, 특별대리인 선임 기타 유산정리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소송 기타 법적 분쟁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선임하거나 상속인으로 하여금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상속인에게 청구하거나 상속재산에서 취득하기로 한다.

### 제4조 (비용 부담)

등기, 명의변경 등 유산정리업무와 관련된 제비용은 제9조에서 정한 보수와는 별도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거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은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 (상속인 대표)

- ① 은행은 유산정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상속인대표에게 설명과 보고를 하고, 상속인대표는 은행이 유산정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시를 한다.
- ② 상속인대표가 사망,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상속인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본 계약 말미에 기재된 다른 상속인이 그 서명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인대표가 된다.

### 제6조 (상속인의 협력)

- ① 상속인은 은행이 유산정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전원의 연서 있는 위임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② 상속인은 상속인대표를 상속재산의 관리책임자로 정하고, 상속인대표는 상속재산 중 은행이 보관 가능한 예·적금 통장·증서, 유가증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 등을 은행에게 인도한다.
- ③ 그 밖에 상속인은 유산정리업무를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에 제공하는 등 유산정리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 (후견개시 등의 신고)

- ① 본 계약 체결 이후 상속인에게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또는 그 후견인 또는 다른 상속인은 그 사실을 은행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위 후견인이 단독으로 본 계약의 해제·해지를 청구하더라도 은행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전항 제1문의 신고 전에 은행으로부터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인도된 경우에는 인도받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일실 및 그 밖에 재산관리상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상속인이 부담하며, 은행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8조 (상속인의 변동)

- ① 상속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는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인 전원임을 확인한다.
- ② 본 계약 체결 이후 상속인의 사망, 상속포기 심판, 인지 판결, 친생관계존부확인 판결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지체 없이 은행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은 전항의 고지가 없는 동안에 이를 알지 못하고 수행한 업무(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인도한 경우도 포함)에 관하여 상속인 및 새롭게 상속인이 된 자에 대하여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본 계약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본 계약 체결 이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본 계약에 따른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 ⑤ 본 계약 체결 이후 상속포기 심판, 인지 판결, 친생관계존부확인 판결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새롭게 상속인이 된 자와 본 계약상의 상속인 지위를 인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 (유산정리 보수)

- ① 유산정리 보수는 [별지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상속인과 은행은 협의하여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상속인은 연대하여 은행에 대하여 전항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은행은 상속재산 중에서 전항의 보수를 수취하거나 상속인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기로 한다.

### 제10조 (계약의 종료 등)

-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종료한다.
  1. 유산정리업무를 완료한 때
  2. 제11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종료해지 된 때
  3. 상속인과 은행이 합의하여 본 계약이 종료된 때
- ②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제2조의 업무범위 중 실제 수행한 업무에 관한 유산정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은 제9조에서 정한 보수를 제외하고 유산정리업무를 처리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11조 (계약의 종료해지)

- ① 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인 전원의 연서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은행은 14일 이상의 최고기간(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을 정하여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상속인에게 통지하고, 상속인이 위 최고기간 내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때
  2. 상속인 내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제6조에서 정한 사항 등 기타 유산정리업무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은행이 유산정리업무를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본 계약 체결 이후 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의 상속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거부한 경우
  4. 본 계약 체결 이후 상속포기, 판결 등으로 의하여 상속인의 범위가 변경되고, 새롭게 상속인이 된 자가 제8조 제5항에 따른 본 계약의 인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 이후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6. 피상속인의 유언이 발견되거나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은행이 유산정리업무를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이 유산정리업무를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본조에 따라 본 계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은행이 기수행한 유산정리업무에 대하여는 그 내용, 규모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산정리보수를 고객과 협의를 거쳐 정산하기로 한다.

## 제12조 (인감의 신고)

- ① 상속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을 미리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감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 ② 은행은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서류 등에 날인된 인영을 신고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고 상속재산분할 기타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인감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이 인감이 위조,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 (변경사항의 통지)

- ①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유언이 발견된 경우
  2. 상속인의 성명,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상속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
  5.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6. 상속재산에 관하여 소송 등 분쟁이 제기된 경우
  7. 제12조에 따른 인감을 분실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8. 기타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은행으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사항
- ② 상속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특약 등)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속인과 은행은 합의하여 특약을 정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이해관계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2. 본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은행과 상속인이 특약을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 ② 본 계약의 내용과 특약의 내용이 경합하는 경우 특약의 내용을 우선적용한다.
- ③ 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별지2 특약사항]에 의한다.
- ④ 본 계약 또는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제15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의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관할법원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상속인과 은행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기명날인한 후 상속인대표와 은행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상속인 대표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상속인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상속인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상속인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	회사명		(인/서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별지 1] 유산정리 보수

유산정리 보수는 상속개시시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평가액에 대하여 다음 (1)의 금액 또는 (2)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최저보수 :

(2) 재산비례보수 :

상속적극재산평가액	보수(부가세 별도)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300억원 초과	

※ 유산정리 보수는 본 계약의 체결 시, 계약보수 총액 중 원은 착수금으로 지급하며,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시점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유산정리 업무 완료 이전에 본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시점에 본 계약 본문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별지 2] 특약사항